

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682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5. 10. 10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나. 인공지능(AI)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- 다. 인공지능(AI) 추진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규정 마련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 예정(비용추계서 별첨)
- 다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5. 7. 28. ~ 8. 17.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있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의견 있음(붙임)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

나) 경 기 도 :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

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기본원칙)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.
2.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, 나이, 인종, 민족, 지역 신체적 조건, 종교, 경제적 사정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.
3.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·

감독할 수 있으며,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,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,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종합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김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
2.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
3.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방안
4.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준수 사항
5.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·경제·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제7조(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공지능(AI)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, 문화,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
4. 인공지능윤리의 준수·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5.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6.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
7. 인공지능 개발·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실·국·소장
2. 인공지능의 과학·기술·산업·경제·행정·법률 등의 분야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3.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4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인공지능 총괄업

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수당·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추진사업)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
2.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
3. 인공지능 기반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
4.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교육프로그램) 시장은 인공지능의 이해도 및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, 시민,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1.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
2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「김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·소 | | 미래전략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실·과·소장 성 명 | 미래전략과장 김 광 식 |
| | 팀 장 직위·성명·전화 | 데이터기반팀장 허 경 덕(☎5136) |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
제3조(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,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·경제·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기본원칙)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익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.
2.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, 나이, 인종, 민족, 지역 신체적 조건, 종교, 경제적 사정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.
3.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,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,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6조(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

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
2.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
3.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
4.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
5.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·경제·문화 등 도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제7조(인공지능위원회)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, 문화,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
4. 인공지능윤리의 준수·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5.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6.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
7. 인공지능 개발·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.

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1.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
2.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인공지능 과학·기술·산업·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,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·법률적·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

- 5.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
-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25.5.7.]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5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6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

제11조(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)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둔다.

제12조(수당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·내외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, 기업, 대학, 연구소 및 단체)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)

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.

1.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<개정 2025.5.7.>
2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「경기도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조례안
 - 제6조(종합계획 수립·시행), 제9조(추진사업), 제10조(교육프로그램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비용 발생(제6조 ①항) : 100,000천원
- 대시민 인공지능(AI)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(제9조 ①항)
 - '김포시 AI 데이터 플랫폼'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발생
: 300,000천원/년(구축비) + 36,000천원/년(유지보수비)
-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(AI) 서비스 이용사업(제9조 ②항)
 - '부서행정업무용 생성형 AI 사용료' 에 따른 비용 발생 : 50,000천원/년
- 기업, 시민, 공무원 인공지능(AI)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(제10조)
 -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비용 발생 : 40,000천원/년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 용역 비용 추계 : 100,000천원
 - 컨설팅업무량(7.42644) × 정보전략계획(ISP) 2025년 단가(11,290,936원)
+ 직접경비(7,058,000원) + 부가세(9,090,945원) = 100,000,403원
 - ※ 컨설팅 업무량 산출근거 : 가중치(42.1) × 난이도(0.18) = 7.42644
 - ※ 정보전략계획(ISP) 2025년 단가적용 : 11,290,936원
 - 2023년 10,010,006원 / 2024년 10,835,831원 / 2025년 11,290,936원
 - 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산업협회) 2025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 계산방식 적용

- 김포시 인공지능(AI)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H/W, S/W,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규모를 감안하여 비용추계
 - 구축비 : 50,000천원(H/W) + 70,000천원(S/W) + 180,000천원(개발비) = 300,000천원
 - 유지보수비 : 300,000천원(구축비) × 12% = 36,000천원
- 부서별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「생성형 AI 유료서비스」 사용료 비용추계
 - AI 이용료 54,000원/월 × 77개소/부서별 × 12개월 = 약 50,000천원
- 기업, 시민, 공무원 인공지능(AI) 이해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
 -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40,000천원(상·하반기) 계상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 2029년 | 2030년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총 소요액 (전액 시비) | 490,000 | 36,000 | 36,000 | 136,000 | 36,000 | 734,000 |
| ①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 | 100,000 | - | - | 100,000 | - | 200,000 |
| ② 인공지능(AI) 플랫폼 구축 | 300,000 | 36,000 | 36,000 | 36,000 | 36,000 | 444,000 |
| ③ 생성형 인공지능(AI) 이용료 | 50,000 | - | - | - | - | 50,000 |
| ④ 인공지능(AI) 교육프로그램 | 40,000 | - | - | - | - | 40,000 |

- ①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 : 2026년 종합계획 수립 후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추진
- ② 인공지능(AI) 플랫폼 구축 : 2026년 플랫폼 구축 후 2027년부터 유지보수(12%/년) 실시
- ③ 생성형 인공지능(AI) 이용료 :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 이후 계속 추진여부 결정
- ④ 인공지능(AI) 교육프로그램 : 2026년 프로그램 운영 후 2027년 이후 계속 추진여부 결정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6년 본예산 편성

- 예산법무과(예산2팀) 재정합의 완료(2025.7.4.)

3. 작성자 :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데이터기반팀장 허경덕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1차연도 | 2차연도 | 3차연도 | 4차연도 | 5차연도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| 490,000 | 36,000 | 36,000 | 136,000 | 36,000 | 734,000 |
| 지방세수입 | 490,000 | 36,000 | 36,000 | 136,000 | 36,000 | 734,000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세 출 | 490,000 | 36,000 | 36,000 | 136,000 | 36,000 | 734,000 |
|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 | 100,000 | - | - | 100,000 | - | 200,000 |
| 인공지능(AI) 플랫폼 | 300,000 | 36,000 | 36,000 | 36,000 | 36,000 | 444,000 |
| 생성형 인공지능(AI) 이용료 | 50,000 | - | - | - | - | 50,000 |
| 인공지능(AI) 교육 프로그램 | 40,000 | - | - | - | - | 40,000 |
| 재원 조달 | | | | | |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| | | | |
| | 보조금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490,000 | 36,000 | 36,000 | 136,000 | 734,000 |
| | 지방세수입 | 490,000 | 36,000 | 36,000 | 136,000 | 734,000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| | | | | |
| 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| | | | |

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

- 자치법규명 : 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조례안
- 입법예고 기간 : 2025. 7. 28. ~ 8. 17.(20일간)
-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

| 순 | 의견 제시자 | | | 제출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| 수용 여부 |
|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|
| | 접수일 | 접수 방법 | 제출자 (단체명) | | |
| 1 | 25.8.18 | 공문 | 김포시 정책기획과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의견</p> <p>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조직·인력의 관한 사항은 조직 및 인사 부서의 업무 권한으로 실·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 및 협조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. 이에 제6조제2항제2호 중 조직 인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 요청함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제6조(종합계획 수립·시행)</p> <p>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2.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조직 인력에 관한 사항</p> </div> | 수용 |

세부평가서 (제8조 관련)

자치법규명: 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 조례안

평가대상 조문

| 개 정 안 | 개선 의견 |
|---|--|
| <p>제8조 (위원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2. 인공지능 과학·기술·산업·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,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3.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·법률적·기술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4.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⑧ 위원회 신분 보장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| <p>(개선권고)</p> <p>제8조제3항 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의 의미가 모호하고 해당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개인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음 ‘인공지능 관련 관련한 학위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자’ 등의 추가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함</p> <p>(개선권고)</p> <p>제8조제8항 관련,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거,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위원회 관련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마련을 개선 권고 함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에 관한 사항은 ‘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등의 추가 규정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함</p> |

평가기준

-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 필요
- 이해충돌가능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

현황 및 문제점

- 제8조제3항: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으로 부패 유발 우려
- 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 등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하는 부패가 생길 위험성이 있고,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아 구체성·객관성이 저해됨
- 제8조제8항: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구체화된 문구 필요

검토결과

- 개선권고안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